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902호 2025. 2. 17.(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3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378호 2025년도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 및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교실」 신청 안내—— 3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383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8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39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205호선)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14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395호 자동차 검사 장기 미수검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 16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5-3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2.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비즈니스로194번길 4-3 외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5.2.17.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378호

2025년도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 및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교실」 신청 안내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관계자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2025년도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 및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교실』을 안내(공고)합니다.

2025. 2.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

☐ 운영개요

- 운영목적: 공동주택 입주자 간의 분쟁과 갈등 해소
- 신청대상: 관내 공동주택 거주자 및 관리주체
- 상담장소: 선정단지 내 관리사무소, 회의실 또는 신청인 세대 내 등
- 상 담 사: 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층간소음관리사 등 관계전문가
- 상담내용
 - 공동주택 입주자 간, 입주자와 관리주체 간의 분쟁 조정
 - 층간소음 및 누수 등 세대 간의 갈등 중재
 - 에너지절약 및 공동체활성화에 관한 컨설팅 등

2.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교실

□ 운영 개요

- 운영목적: 공동주택 관리분야에 대한 단지별 맞춤형 방문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의 자치역량 강화
- 신청대상: 관내 공동주택 단지
- 교육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관리주체(관리인 포함), 입주자등
- 교육장소: 선정단지 내 회의실 등
- 교육시간 및 인원: 단지별 2시간 정도(10명 내외)
 - * 교육시간은 신청단지와 협의하여 조율 가능
 - * 인원은 최소 7명 이상 최대 13명 이하로, 인접 단지와 공동 신청 가능
- 강 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소속 전문강사
- 교육내용
 - 공동주택관리법령, 관리규약 및 제규정에 관한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절차
 - 비의무(소규모)단지 의무사항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단지별 관리 취약 분야의 요청 사항 및 현안 문제 자문 등

□ 조건 및 유의사항

- 교육단지는 선착순으로 선정하며, 신청서 제출 시 보완사항이나 미비서류가 있을 경우 후순위자 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교육인원은 단지별로 최소 7명 이상 최대 13명 이하를 충족해야 가능하므로 참석 가능한 인원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 바람. 다만, 1개 단지에서 인원이 적을 경우 인접 단지와 공동으로 신청이 가능함
- 선정된 단지에 한하여 결과를 통보할 예정으로, 교육 일정(시간 등)은 선정 단지 및 전문강사와 협의하여 결정함

3. (공통) 신청개요

- 신청기간: 연중 실시(예산 범위 내 실시)
- 신청장소: 서구청 주택관리과(문의: 주택민원팀 ☎ 032-560-3121~5)
- 신청방법: 방문 또는 팩스, 이메일 접수
 - 방문: 서구 서곶로 323, 세민빌딩 3층 주택관리과
 - 팩스: 032-560-2736, 이메일: hang1116@korea.kr
 - * 팩스, 이메일 접수 시 우리 구에 확인 전화 요망
- 신청서류(서구청 홈페이지)
 - 행정공개 - 행정정보 - 부서자료실 -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
 - 행정공개 - 행정정보 - 부서자료실 -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교실

- 붙임 1.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 신청서 1부
2.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교실 신청서 1부. 끝.

<붙임 1>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 신청서

성명		연락처(H.P)	
주소			
E - mail			
단지명			
상담분야			
상담요지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상담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붙임 2>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교실 신청서

단지명		연락처	
주 소			
참여인원	총○○명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명,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명, 관리주체 ○명, 입주자등 ○명)		
신청사유	교육내용 확인 후 간략히 기재		
단지 내 관리 취약분야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재		
기타 요청사항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재 교육을 원하는 일시 등 기재		
위와 같이 찾아가는 맞춤형 교실 운영에 따른 교육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 과정의 투명성 및 민주성 제고를 위해 공약사항의 확정 기한 및 실천계획서 수립기한, 실천계획 변경 시 주민 승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체계적으로 공약사항을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약사항 확정 기한을 정함(안 제5조)
-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기한을 정함(안 제6조)
- 공약사항 실천계획 변경 시 구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정책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서구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 과정의 투명성 및 민주성 제고를 위해 공약사항의 확정 기한 및 실천계획서 수립기한, 실천계획 변경 시 주민 승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체계적으로 공약사항을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약사항 확정 기한을 정함(안 제5조)

나.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기한을 정함(안 제6조)

다. 공약사항 실천계획 변경 시 구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최종” 을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최종” 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실천계획으로” 를 “취임 후 180일 이내에 실천계획으로”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변경할 수 있다” 를 “변경하고 이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약이행평가단 등 구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5조(공약사항 확정) ① ~ ③ (생략)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u>최종</u> 확정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수립) ①·② (생략)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u>실천계획으로</u> 확정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 ① 주관부서 등의 장은 실천계획이 확정된 후에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로 계획을 수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u>변경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계획은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약사항 확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취임 후 100일 이내에 최종</u> ----- -----. 제6조(실천계획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취</u> <u>임 후 180일 이내에 실천계획으로</u> ----- --. 제7조(실천계획 변경) ① ----- ----- ----- ----- <u>변경하고 이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u> <u>출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약이행평가단 등 구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의견제출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국(군·구)별 의견			
협 의 개 요	국 별	제 출 의 건	검 토 내 용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39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205호선)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205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계획과(☎032-560-4762)에 비치되었으며,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318-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205호선)
- 명 칭: 당하동 소로1-205호선 회차로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회차로 면적 : 182.3m²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연번	성명	주소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2	한국토지주택공사 검단사업본부장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626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2026. 6.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당하동 1318-9	공	8,251.8	182.3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열람 장소 및 기간

○ 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본관 4층 도시계획과

○ 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계획과(☎032-560-4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395호

자동차 검사 장기 미수검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자동차 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하고, 같은법 제24조의2 제3항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기간 : 2025. 2. 17. ~ 2025. 3. 5. 까지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내용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차량 공고
4. 공고사항

가.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를 명하였습니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2의2호에 따라 운행정지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따라 직권으로 자동차 말소등록이 가능하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차량을 임시운행 하실 수 있으며, 임시운행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 등록증을 휴대해야 합니다.

5.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 (☎032-560-4892)

[붙임]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연번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소유주	사유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1	22부0101	BMW325C i	김*충	검사 미필	2025.02.17.
2	82루2442	포터 II (PORTER II)	손*석	검사 미필	2025.02.17.
3	22더5425	제네시스 쿠페(GENESIS Coupe)	나*철	검사 미필	2025.02.17.
4	28버5436	쏘나타(SONATA)	(*****아	검사 미필	2025.02.17.
5	46구4625	그랜저(GRANDEUR)	원*식	검사 미필	2025.02.17.
6	26러3756	레이	김*영	검사 미필	2025.02.17.
7	46조9935	크루즈 1.8 DOHC	오*희	검사 미필	2025.02.17.
8	89서3916	포터 II (PORTER II)	크*****사	검사 미필	2025.02.17.
9	36보9211	그랜저(GRANDEUR)	김*수	검사 미필	2025.02.17.
10	48러8399	카니발 하이리무진	김*현	검사 미필	2025.02.17.
11	54오5126	K7	이*영	검사 미필	2025.02.17.
12	93보9882	한국토미22.5톤카고트럭	(*****티	검사 미필	2025.02.17.
13	115가9878	스팅어	이*사	검사 미필	2025.02.17.
14	54소1807	모닝	김*준	검사 미필	2025.02.17.
15	57우5376	카렌스	장*호	검사 미필	2025.02.17.
16	133다5978	제네시스 쿠페 (GENESIS Coupe)	김*희	검사 미필	2025.02.17.
17	89무6869	포터 II (PORTER II)	백*권	검사 미필	2025.02.17.
18	15수2671	모닝	(*****업	검사 미필	2025.02.17.
19	356보5293	K5	최*영	검사 미필	2025.02.17.
20	385보1119	벤츠 C 200 Cabriolet	윤*협	검사 미필	2025.02.17.
21	10너0958	INFINITI Q70 3.7	노*현	검사 미필	2025.02.17.
22	274수2301	K7	김*철	검사 미필	2025.02.17.
23	인천85아4396	현대내장차	허*민	검사 미필	2025.02.17.
24	16거9436	A7 3.0 TFSI quattro	심*민	검사 미필	2025.02.17.